

# 2026년 「수출·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」 모집공고

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의한 평택시 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,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8일  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## 0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「수출·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」
- 사업목적 : 관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
- 사업내용 : 수출·환변동 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 :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
  - 공고 마감일 기준 본사, 연구소, 등록공장 소재지가 평택인 중소기업
    - ※ 사업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내 평택 주소 확인
  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   - ※ [붙임1]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참조

※ 본 사업은 중동지역 위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, 기존 연간 지원사업 수혜 제한기준과 별도로 적용함. 이에 따라 당해 연도 3개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본 사업 지원이 가능함

### □ 지원내용

구분	모집규모	지원한도
단기수출보험	40개사 내외 ※ 선착순 모집	기업당 최대 3,000천원
수입보험		
수출신용보증		
환변동보험		

## 02

## 세부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40개사 내외 (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)

□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3,000천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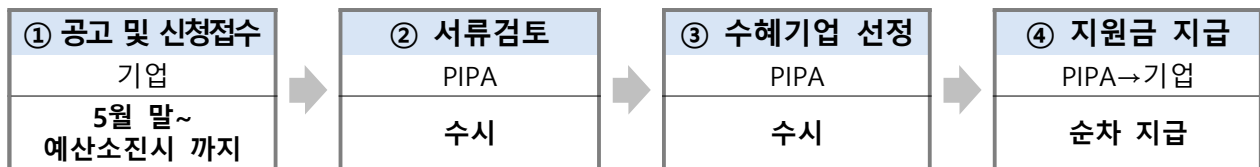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방식 : 사후정산 방식

※ 공고일 이전 집행분(2026년도 발생 건) 포함 소급 지원 가능

□ 지원내용 :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·환변동 보험료 지원(여러 건 합산 가능)

구 분	비 고
단기수출보험	※ 단기수출보험(단체보험) 지원 제외
수입보험	-
수출신용보증	-
환변동보험	※ 환변동 보험(일반형)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해당 이익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약관 및 기준에 따라 기업이 납부하여야 함

□ 추진절차



※ 위 일정은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03

## 선정기준

□ 선정방법

○ 신청기업의 보험료 집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사업담당자가 적정성 및 자격 요건,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,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

○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가능하며,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

□ 선정기준

○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및 제출 완료 기업

○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·환변동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으며, 가입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

○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## 04

## 신청 및 접수

### □ 사업신청

- 신청기간 : (선착순) 2026. 6. 1.(월) 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  
 ※ 2026. 6. 1.(월) 9:00 이후 온라인 접수 건에 한하여 인정
- 신청방법 : ‘평택기업지원시스템’ 홈페이지(pipabiz.or.kr/icu) 온라인 접수
- 문의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(031-8029-9348)
- 제출서류 : PDF 파일로 제출(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)

구분	번호	서류명	비고
필수	1	신청서	붙임 1
	2	개인정보활용동의서	붙임 2
	3	확약서	붙임 3
	4	사업자등록증	-
	5	사업자등록증명원	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
	6	(해당 시)법인등기부등본	말소사항 제외(현재 유효사항만 포함)
	7	중소기업확인서	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
	8	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	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
	9	보험가입 증빙서류	보험증권 또는 가입확인서
	10	보험료 납부 증빙서류	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등

## □ 유의사항

-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은 당해연도 선정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함
- 심사 및 확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한 기한 내 보완되지 않거나 필수제출서류의 누락, 식별 불가, 허위 기재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결과 금액이 상이할 경우, 제출서류 및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
- 보증·보험 가입 후 수출통지 취소, 보증·보험 중도해지, 대출금 조기상환 등의 이유로 보험료 또는 보증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,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.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보험·보증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지원 제외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허위·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
-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(담당자 이메일, 구두 공지사항)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기업 수요,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-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

## □ 지원제외

- 중견기업 및 대기업
-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, 단순 유통, 도·소매 업체, 타사 명의 참가
- 휴,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정부, 지자체,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
- 지원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
- 신청일 기준, 국세·지방세, 세외수입 체납 기업(완납시 지원 가능)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
- 제출서류 작성·구비가 불성실한 경우
- 부가세, 관세, 송금수수료는 지원 제외
- 이외 선정평가 위원회 결과 진흥원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【붙임 1】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

지원제외 업종 총괄표

업 종	품목코드	해 당 업 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일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,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 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*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【붙임 2】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

구 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
		참여제한	지원금 환수
부정수급	□ 동일·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(중복수혜)	5년	전액 환수
중단·실패	□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, 실패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	□ 중단,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(사망 등)	면제	집행잔액 환수
	□ 지원기업(위탁기관) 부도·폐업으로 중단, 실패한 경우(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)	1년	집행잔액 환수
	□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		
	○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	1년	전액 환수
○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	면제		
포기	□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○ 관련 증빙 제출 필요	면제	전액 환수
	□ 부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1년	전액 환수
사업비 집행	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	5년	전액 환수
	□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(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) ○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, 편취한 경우	5년	전액 환수
	○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○ 단순 착오,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*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,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	경고	해당금액 환수
	○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,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	□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	5년	전액 환수
협약 위배	□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□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	1년	해당 없음
	□ 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	□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		
성실 위반	□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		
	□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	경고	해당 없음

\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\*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
\* 연간 경고 2회 = 참여제한 1년 ※ 경고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

\* 사업수행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,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참여를 제한 <신설 2021.03.04.>

\*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

-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